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3호

24년 7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4년 제7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권리산정기준일 및 설정지역

가. 대상지: ‘24년 7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신청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동구	천호동 145-11	57,536	‘24.08.12.	
2	구로구	개봉동 20	60,000	‘24.09.19.	
3	마포구	망원동 435	67,319	‘ 24.09.30.	
4	마포구	망원동 432	68,691	‘ 24.09.30.	
5	마포구	망원동 425	74,265	‘ 24.09.30.	
6	강서구	등촌2동 574-6	68,147	‘24.09.27.	
7	강서구	화곡4동 464-15	76,150	‘24.09.27.	
8	강서구	화곡4동 812-12	64,974	‘24.09.27.	
9	강서구	화곡4동 815-1	74,957	‘24.09.27.	
10	강서구	화곡1동 422	45,718	‘24.09.27.	
11	강서구	화곡본동 98-88	3,557	‘24.09.27.	금회 고시
			53,298	‘ 24.05.17.	‘24.7.18. 기 지정·고시
12	강서구	화곡본동 772	4,790	‘24.09.27.	금회 고시
			97,300	‘ 24.05.17.	‘24.7.18. 기 지정·고시
13	종량구	면목2동 137-49	48,212	‘24.09.30.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4	동작구	사당동 300	39,713	'24.09.30.	
15	동작구	사당동 449	65,258	'24.09.30.	
16	강북구	수유동 141	14,318.3	'24.09.30.	금회 고시
			81,873	'23.11.30.	'23.11.30. 기 지정·고시
17	강북구	변동 469	99,462	'24.09.30.	
18	강북구	수유동 412-131	79,970	'24.09.30.	
19	강북구	수유동 31-10	65,961	'24.09.30.	
20	도봉구	도봉동 584-2	95,786	'24.09.25.	
21	양천구	신월2동 455-1	67,146	'24.09.25.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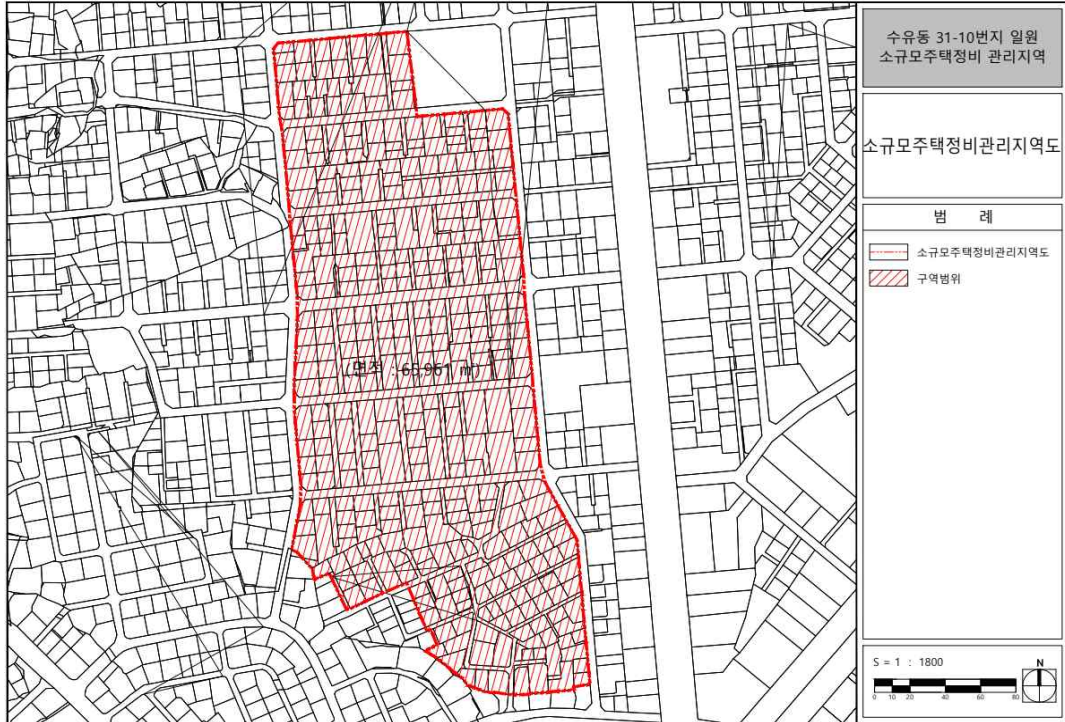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락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강북구 수유동 31-10 일원



○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

